

■ 최신 판례 ■

회사가 근로자를 면접한 후 4대보험을 신고하고 기술자로 등록하였다면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한 사례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

이광선 변호사 | 신혜주 변호사

회사가 근로자를 면접한 후 4대보험을 신고하고, 회사 기술자로 등록하였다면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7년 9월에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전기공사업체인 피고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7년 10월 21일 면접 이후 원고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7년 10월 25일에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고, 원고를 회사 기술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7년 10월 31일에 원고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고, 기술자 등록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회사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마치고 원고를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한 것은 원고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채용내정통지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통보로 인한 고용취소가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